

성능인증 등급(제16조제3항 관련)

1.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결정한다.

- 가. 반복재현성
- 나. 상대정밀도
- 다. 자료획득률
- 라. 정확도
- 마. 결정계수

2.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.

등급	반복재현성	상대정밀도	자료획득률	정확도	결정계수
1등급	80% 초과	80% 초과	80% 초과	80% 초과	0.8 초과
등급 외	80% 이하	80% 이하	80% 이하	80% 이하	0.8 이하

비고

1.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성능인증 등급은 등급 외로 한다.
2. 제1호가목의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,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평가를 받을 수 없다.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